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069
------------	------

2017년 9월 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22일, 우형찬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고 면적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의 25/1000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23 ~ 8. 30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수용

- 현재 표준운송원가 중 자가차고지비 항목은 해당 차고지 공시지가의 25/100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우리의 재정지원(표준운송원 지급액)이 증가되지 않음
- 다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전체 13개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절차를 정한 기존 규정(제3조제2항)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 지침’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의¹⁾ ‘차고지비’ 중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차고지를 ‘자가차고지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 현재 표준운송원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자가차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중 ‘차고지비’는 변동이 비교적 잦은 항목으로써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차고지비의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항목 변동을 안정화시키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가동비(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보유비(정비직 인건비, 사무관리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차량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유지비, 차고지비, 기타관리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 13개 항목

※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의 차고지비 항목 내용

연 도	차고지비
2004	○ 보유차량에 대하여 1년에 m^2 당 개별공시지가의 2.5% ○ 해당 적용 토지면적 : 대형($36m^2$), 중형($23m^2$)
'05~'06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등급에 따라 1,000원 ~ 7,000원(대형기준)까지 차등지급(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07~'08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09~'11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 공영차고지 : 해당 $60m^2$ 적용,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해당 $40m^2$ 적용
2012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70%) 적용 ▶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 해당 $40m^2$ 적용(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2013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80%) 적용 ▶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 해당 $40m^2$ 적용(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2014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90%) 적용 ▶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 해당 $40m^2$ 적용(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15~'16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지급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100%) 적용 ▶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 공시지가×25/1000×대당 $40m^2$ 적용(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 다만,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총 13개 항목 중 차고지비의 '자가차고지 등' 항목만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한편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차하는 차고지의 임차비용이 서울시가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차고지비의 또 다른 항목인 '공영차고지'의 경우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2)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납부

2)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

하고, 서울시가 동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납부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p> <p>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p>